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792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11. 20.

판결 선고 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269.98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일반음식점 217.27㎡ 인도하고,
나. 2024. 4. 2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1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정도영

별지